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통해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주택우선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우선공급에 대한 신청과 추천 절차의 명확화(제7조, 제9조)

- 주택의 유형에 따라 신청과 추천 절차를 명확히 분류하여 규정

나. 주택우선공급 추천순위 기준 개정(제9조)

- 과거 근무기업보다 현재 근무기업에 점수 가중치 높게 부여하여 현재 근무 중인 기업에서 장기 근속한 근로자를 우대
- 기존에 가점(총합 : 5점)으로 통합되어 있는 4가지 항목을 각각 분리하여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우선순위 산정에 변별력 갖춤

다. 기타 불필요한 규정 삭제(기존 규정 제6조, 별지 신청서 서식)

- 지방청의 무주택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규정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 신청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관련 시스템으로 확인 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인력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전화 : 042-481-4471, Fax : 042-472-3278)

- 별첨 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 전문 1부
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부